

#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규정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11.30		16		
2	2022.10.24		17		
3	2023.5.8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구성·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교육품질혁신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0.24.>

1.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, 기획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24., 2023.5.8.>
3. 임명직 위원은 교육과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5.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,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,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2.10.24>
6. 간사 1명을 두며 미래교육혁신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3조 (기능)** ① 교육품질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10.24., 2023.5.8.>

1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10.24>
  2. 교육성과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10.24>
  3.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10.24>
  4.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
  5. 대학 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
  6. 강의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10.24>
  7. 그 밖에 중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10.24.>
- ②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안건은 교무위원회에 부의한다.  
<본항 신설 2023.5.8.>
1. 교육과정 정기 개편에 관한 사항
  2. 교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

**제4조 (직무)**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<개정 2022.10.24>

2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.

**제5조 (회의)** 교육품질혁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된다.<개정 2022.10.24>
2.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 개최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의 2 (핵심역량)** 교육품질혁신위원회는 핵심역량 설정 및 점검·환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2.10.24>

1. 교내 SPACE 핵심역량 진단결과 연차보고서<개정 2022.10.24>
2. 교외 핵심역량 진단결과 연차보고서<개정 2022.10.24>
3. 교내·외 핵심역량진단 결과 및 대내·외 사회여건 분석을 토대로 한 핵심역량개편보고서(4년 주기)<개정 2022.10.24>

**제5조의 3 (전공능력)** 교육품질혁신위원회는 전공능력의 설정 및 점검·환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2.10.24>

1. 전공능력 성취도 평가결과 연차보고서<개정 2022.10.24>
2. 전공능력 성취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전공능력 개편보고서(4년 주기) <개정 2022.10.24>

## 제 2 장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

**제6조 (구성)**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는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0.24>

1. 위원장은 기초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당연직 위원은 각 학부(과)장, 영어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명직 위원은 교양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5. 간사 1명을 두며 교무처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7조 (기능)**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 개편 및 교양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·총괄에 관한 사항<개정 2022.10.24>
2. 교양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기초교양교육원, 영어교육원 및 학부(과)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8조 (직무)**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<삭제 2022.10.24>
3.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9조 (임무)**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2. 매 학년도말 추진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0조 (회의)** 교양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2.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말 개최 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

**제11조 (구성)**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0.24>

1.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당연직 위원은 각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명직 위원은 각 전공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5. 간사 1명을 두며 교무처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12조 (기능)**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·총괄에 관한 사항
2. 전공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학부(과)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
4. 기타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3조 (직무)**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<삭제 2022.10.24>
3.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14조 (임무)**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매 학년도말 추진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5조 (회의)** 전공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2.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말 개최 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

**제16조 (구성)**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10.24>

1. 위원장은 교육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명직 위원은 비교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5. 간사 1명을 두며 교육성과관리센터 직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2.10.24>
6. <삭제 2022.10.24>

**제17조 (기능)**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교육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·총괄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교육과정 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‘학습역량지원’ 분야, ‘진로·심리 상담지원’ 분야, ‘취·창업지원’ 분야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

## 4. 기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8조** (직무)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 <개정 2022.10.24>
2. <삭제 2022.10.24>
3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19조** (임무)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추진사항을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 한다.<개정 2022.10.24>
2. 매 학기 말 추진 실적의 결과를 교육품질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매 학기 ‘학습역량지원’ 분야, ‘진로·심리 상담지원’ 분야, ‘취·창업지원’ 분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을 제출받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.<개정 2022.10.24>
4. ‘학습역량지원’ 분야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총괄하며 ‘학습역량지원’ 분야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.<개정 2022.10.24>
5. ‘진로·심리 상담지원’ 분야는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총괄하며 ‘진로·심리 상담지원’ 분야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.<개정 2022.10.24>
6. ‘취·창업지원’ 분야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총괄하며 ‘취·창업역량지원’ 분야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등을 점검한다.<개정 2022.10.24>

**제20조** (회의) 비교과교육과정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22.10.24>
2. 정기회의는 매 학기 말 개최 한다.<개정 2022.10.24>
3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24>
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5 장 기 타

**제21조**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품질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 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‘교육과정위원회 규정’은 폐지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